이륜자동차 좌회전 과속 주행 부딪힘 사망 재해

재해일자	2018년 12월 15일	재해현황	사망 1명
작 업 명	음식 배달	재해장소	서울 OO구청입구사거리

재해발생 개요

그림 1. 사고발생장소

- 2018. 12. 15(토) 오후 22:38경 서울 OO구청입구사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죄회전하던 이륜차가 인도의 전화부스에 충돌하고 넘어져 배달원의 머리부분에 부상을 당함
- 재해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2018.12. 29.(토)에 사망함

재해발생 원인

1. 승차용 안전모 미착용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는데,
- 사업장에 안전모를 근로자수 이상으로 비치하고 있으나 착용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배달원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운행하여 사고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없음

2. 교차로 좌회전 시 과속 주행

- 사고순간을 목격한 행인의 진술에 의하면, 이륜자동차가 과속으로 좌회전 주행하여 원심력에 의해 도로의 바깥부분으로 나가 인도의 전화부스에 충돌함

재해예방 대책

1. 승차용 안전모 착용 확인

- 사업주는 배달원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승차용 안전모의 착용상태를 확인하여 미착용시 운행을 금지하여야 함

2. 교차로 및 곡선도로 감속 운행

- 교차로 진입 전에 감속하고 교차로를 벗어난 이후 정상 속도 유지
- 미리 도로 중앙에 접근하여 교차로의 중심 바로 안쪽을 서행하면서 좌회전 주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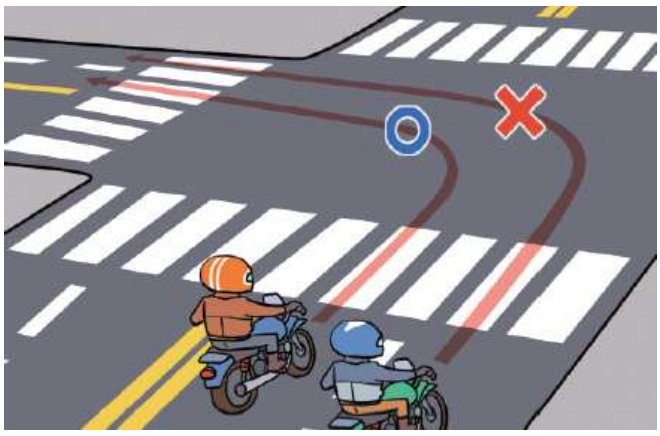

그림 2. 이륜자동차 죄회전 주행방법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